

제2024-은평구-도시계획과-경관-02호

행정대집행 고지서

성명(단체명): 미상(노점 및 적치 행위자) 귀하

주소: 은평구 통일로 749, 대우약국 앞 (노점 및 적치물 위치)

귀하 소유의 아래 적치물을 2024년 3월 26일, 4월 8일 자진 정비하도록 경고장을 부착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주민 통행 및 도시 미관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4년 5월 9일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『도로법』 제73조 및 『행정대집행법』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지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『행정대집행법』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『행정대집행법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| 위치 | 대상 또는 종류 | 수량 | 대집행 방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
| 은평구 통일로 749, 대우약국 앞 | 노점 행위를 위한 각종 집기류 등 | 1건 | 철거 |

2024년 4월 25일

은 평 구 청

